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8. 3. 6.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발의일자 : 2018년 2월 19일

나. 발 의 자 : 김재진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 2018년 2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20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건설위원회(2018. 3. 5.)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김재진 의원)

가. 제안이유

- 「수도법」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수도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공중화장실 비상알림장치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의 사전 예방 및 각종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신설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해야 하고 미설치시 이행을 명할 수 있음 (안 제5조제6호~제7호)
 - 비상알림장치 또는 유사한 안전장치 설치(안 제5조제8호)

-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상위법 일치(안 제7조제1항)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18조제2항)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이인재)

- 본 개정조례안은 2011.11.14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중화장실 설치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공중화장실 이용자에게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범죄예방 및 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내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안 제5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내용을 추가하고자 제6호 및 제7호를 신설하여 「수도법」 제15조제2항 규정을 반영, 공중화장실 내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규정을 두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게 규정 하였으며, 제8호를 신설하여 공중화장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공중화장실내에 비상알림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안 제7조에서는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은 상위법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내용을 반영, 정비 하였으며
 - 안 제18조제2항을 신설하여 동 조례안 제5조제6호 및 제7호 신설 규정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었으며
 - 안 별표에서는 과태료 근거 조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 하였고
 -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및 용어 등을 수정, 정비함.
- 2018.1월 현재 우리구에서 관리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은 총 40개소로 대부분 취약지역 및 한적한 공원 등 사각지대에 설치되어 있어 그동안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 특히 여성 및 어린이들은 공중화장실 이용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

※ 영등포구 관내 공중화장실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청소과 관리	푸른녹지과 관리	민간개방화장실
공중화장실	80	16	24	44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화장실 내에서 범죄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¹⁾ 범행의 종류도 강도 등 강력 범죄 뿐 아니라 성추행, 몰래 카메라 등 혐오성 범죄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각 지자체와 경찰에서는 공중화장실 범죄 예방을 위하여 폐쇄회로 설치, 경찰서와 연결된 비상벨 설치, 남녀 화장실 분리 설치 등 시책추진에 중점을 두고 있음.

※ 2017년도 공중화장실 범죄 발생 현황

(단위 : 건)

죄종	강력범죄 (살인강도강간등)	절도	폭력 범죄	지능 범죄	풍속 범죄	기타	합계
건수	169	439	232	379	654	177	2,050

- 우리구에서도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하여 공중화장실에 비상알림장치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실행함으로써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각종 범죄예방 및 사건 사고 등 응급상황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수도법」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 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절수 효과에 따른 예산절감도 기대됨.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중 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및 『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1) 경찰청 「경찰범죄통계」

- 최근 3년간 공중화장실 범죄방생건수

※ 2015년 1,795건 2016년 1,981건 2017년 2,050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재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51
----------	-----

발의년월일: 2018년 2월 19일

발의자: 김재진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수도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공중화장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로 수도물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비상알림장치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범죄예방 및 각종 비상상황에 적극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중화장실 설치기준 신설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를 해야 하고 미설치시 이행을 명할 수 있음(안 제5조제6호~제7호)
- 비상알림장치 또는 유사한 안전장치 설치(안 제5조제8호)

나. 공중화장실 관리인 교육 상위법과 일치(안 제7조제1항)

다.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미설치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18조제2항)

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련 근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수도법」 제15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2018. 2. 9. ~ 2. 14.):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각 호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제2호 중 “내벽”을 “안쪽 벽”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제6호부터 각 호 외의 부분(중전의 제1항)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7. 구청장은 제6호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8.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급상황 발생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3회이상”을 “3회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10조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상시”를 각각 “항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9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3조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를 “(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 지체없이”를 “경우에는 지체 없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날로부터 15일이내”를 “날부터 15일 이내”로, “적용일로부터 15일전”을 “적용일부터 15일 전”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별표 제1호”를 “별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5조제6호를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와 제5조제7호에 따른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제19조 중 “시행에 관하여”는 “시행에”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사항이 둘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따른다.
-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변동 전에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 다. 위반행위 횟수는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 개별기준

(단위 : 만원)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때	법 제21조 제2항제1호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제3호			
가.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법 제19조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제4호	10	20	30
5. 법 제14조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 5. (생략)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제5조(설치기준)</p> <p>-----</p> <p>-----</p> <p>-----</p> <p>-----</p> <p>각 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안쪽 벽----- <p>-----</p> <p>-----.</p> 3. ~ 5. (현행과 같음) 6. <u>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u> 7. <u>구청장은 제6호에 따라 공중 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u> 8. <u>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급상황 발생 비상알림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u>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범위-----
-----.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

1. -- 3회 이상 -----
-.

2. ----- 대해
서는-----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

3. -----

----- 연 1회 -----
-----.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 따른 -----

-----.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현행과 같음)

② -----

항상 -----.
항상 -----

----- 한정하여 -----
--.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 법 제9조에 따른 -----

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1. ~ 3. (생략)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제1호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②-----

날부터 15일 이내-----

적용일부터 15일 전-----

-----.

③-----
----- 경우에는-----

-----.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 별 표 -----
-----.

② 제5조제6호를 위반하여 절수 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않은 자와 제5조제7호에 따른 구청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

<p>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u>시행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준은 「수도법 시행령」 제69조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u></p> <p>제19조(시행규칙) -----<u>시행에</u> -----.</p>
--	---

현행안	개정안
<p>[별표 제1호]</p> <p>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p> <p>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u>2</u>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의한다.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u>변동전에</u>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회수는 <u>당해</u>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p> <p>2. 개별기준 (단위 : 만원)</p>	<p>[별표]</p> <p>과태료 부과기준(제18조 관련)</p> <p>1. 일반기준 가. 위반사항이 <u>둘</u> 이상일 때에는 그 중 중한 처분에 <u>따른다</u>. 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변동시, <u>변동 전에</u> 행하여진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있다. 다. 위반행위 <u>횟수</u>는 <u>해당</u>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적용한다.</p> <p>2. 개별기준 (단위 : 만원)</p>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위 반 사 항	근거조항	부 과 금 액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1호				1.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1호			
가.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가. 법 제6조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20	40	60
나.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나. 법 제10조 이동화장실 설치명령 불응		10	20	30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2호				2. 유료화장실 표지부착 및 설치·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가.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가. 법 제11조제2항의 표지부착 위반		10	20	30
나.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나. 법 제11조제4항 설치·관리기준 위반		20	30	4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3호	20	40	60	3.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3호			
가. 제7조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가. 법 제7조·제7조의2의 설치기준을 위반한 때		20	40	60
나.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나. 법 제8조의 관리기준을 위반한 때		10	20	30
4.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1항 제4호	10	20	30	4. 법 제19조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	법 제21조 제2항 제4호	10	20	30
5.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2항	5	10	20	5. 법 제14조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때	법 제21조 제3항	5	10	20